

보 도 설 명 자 료

(16. 7. 15)

수신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: “올 여름 최대전력, 8천만kW를 넘을 것으로 예상”관련
(7.14, 뉴시스)

□ “문열고 냉난방 영업제한” 조치와 관련하여, 현재에는 시행하지 않고 있으나,

-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13, 14조에 따라, 전력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예고를 거쳐 위반업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임

* (위반횟수별 과태료) : (1회) 50만원, (2회) 100만원, (3회) 200만원,
(4회 이상) 300만원

□ 다만, 과태료부과 이전이라도 대표적인 에너지낭비사례인 “문 열고 냉난방 영업”이 자제될 수 있도록 할 계획

- 이를 위해 서울시와 구청, 에너지공단, 한전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계도하여, “문열고 냉방영업”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권고할 계획임

< 참고 > 관련법령

①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조 2항

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외 에너지사정의 변동으로 에너지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에너지수급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에너지사용자·에너지공급자 또는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소유자와 관리자에게 조정·명령,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

②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제13, 14조

제13조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수급의 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·기간 및 대상자 등을 정하여 조치 예정일 7일 이전에 에너지사용자·에너지공급자 또는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소유자와 관리자에게 예고하여야 한다.

제14조(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)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사용의 제한조치를 할 때에는 조치를 하기 7일 이전에 제한 내용을 예고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히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제한 전일까지 이를 공고할 수 있다.

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노건기 과 장 (044-203-5240)
임기홍 사무관 (044-203-5254)
에너지신산업정책과 김상모 과 장 (044-203-5360)
안근영 사무관 (044-203-5362)